

의안 번호	제3369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11월 16일 권민찬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11월 24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11월 24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11월 24일

2. 개정이유

- 2023년 8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의장의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청구인명부 제출 후 수리 및 각하 결정기한 신설(안 제10조의2)
- 사무협조 사항 중 청구권자 확인 사무 추가(안 제12조제1호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사무협조 사항 중 청구권자 확인 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원안 붙임

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김포시장”을 “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김포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그 지방자치단체”를 “김포시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

1.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: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2.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경우 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김포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김포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)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 ①(생략) ② <u>김포시장</u> 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	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.)</u> ----- -----.
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자 수) ①(생략) ② <u>김포시장</u> 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	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자 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시장</u> ----- -----

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
의회에 알려야 한다.

제8조(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) ①
(생략)

② 의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·
면·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
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
게 해야 한다.

<신설>

-.

제8조(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김포시-----

-----.

제10조의2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의장
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
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
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

1.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
없는 경우: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
열람기간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
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
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
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2.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
끝난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
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
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
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
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
심사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

제12조(사무협조)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김포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김포시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<신 설>

1. · 2. (생략)

내

제12조(사무협조) -----

----- 시장-----
----- . ----- 시장
은 -----
----- .

1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

2. ·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